

의안번호	제 31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수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8년 8월 28일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수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1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8년 8월 28일

발의자 : 이수완, 윤남진, 김기창,
박병진, 연종석, 오영탁,
육미선

1. 제안이유

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이 타 조례에 명시된 우대내용과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 변경(안 제5조)

- 도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함.

나. 기타 조문 수정(안 제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 :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와 협의

라. 입법예고 : '18. 8. 14. ~ '18. 8. 19. (의회홈페이지)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도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.

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6조 중 “조례”를 “조례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우대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도가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청남대 등 도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6조(시행규칙) 이 <u>조례</u>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우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도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.</u></p> <p><삭제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시행규칙) -- <u>조례의</u> ---- ----- -----.</p>

관계 법령

[병역법]

제82조(병역의무 이행의 장려)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.

[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]

제20조(병역명문가 우대)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